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대한이연 협력사 행동규범


제·개정사항

제·개정 No	제·개정일	제·개정 조항 및 내용
0	2023. 11. 30	협력사 행동규범 신규 제정
1	2024. 04. 02	조직개편에 따른 개정
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목차

1. 제정목적	4
2. 적용범위	4
3. 협력사 책임과 역할	4
4. 윤리	4
1) 투명경영 및 반부패	4
2) 불공정 거래 방지	4
3) 정보보호	4
4) 책임있는 자재구매	5
5) 수출제한 준수	5
6) 이해상충 방지	5
7) 위조부품 방지	5
8) 원자재수급관리	5
5. 환경	5
1) 환경경영체계 구축	5
2) 수자원(용수/폐수) 관리	5
3) 온실가스 관리	6
4) 폐기물 관리	6
5) 대기오염물질 관리	6
6) 화학물질 관리	6
6. 노동/인권	6
1) 차별금지	6
2) 인간존중	6
3) 직장 내 괴롭힘 금지	6
4)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	7
5) 인도적 대우	7
6) 결사의 자유보장	7
7)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	7
7. 안전, 보건	7
1) 안전보건체계	7
2) 비상상황 대응	7
3)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안전관리	8
4) 사고관리	8
5) 보건관리	8
6) 안전진단	8
8. 운영 시스템	8
1) 행동규범 공유	8
2) 교육 및 소통	8
3) 리스크 관리	9
4) 정보관리	9
5) 고충처리제도 운영(신고제)	9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6) 담당자 선임 9
7) 규범 준수 9
8) 협력업체 관리 9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1. 제정목적

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, 디지털화,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 중이며, 대한이연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합니다. 본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윤리, 환경, 노동인권, 안전보건의 운영 시스템 각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. 대한이연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어 상호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.

2. 적용범위

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, 하위 거래 협력사까지도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3. 협력사 책임과 역할

대한이연의 거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대한이연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, 점검 및 실사시 발견된 리스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
본 행동규범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으며 대한이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윤리

1) 투명경영 및 반부패


- ①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횡령, 청탁, 공갈, 알선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 등을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 됩니다.

2) 불공정 거래 방지

- ① 협력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협력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.

3) 정보보호

- ① 협력사는 보완이 요구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통해 보호해야 한다.

4) 책임있는 자재구매

- ① 협력사는 분쟁광물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 등)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인권침해, 윤리위반 등의 이슈와 관련성 없음을 인증여부 자체확인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5) 수출제한 준수

- ① 협력사는 관련 법률과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, 수출제한 국가, 지역, 개인과 거래해선 안 된다.
- ② 법령 및 규약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.

6) 이해상충 방지

- 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부적절한 이익 목적으로 약속, 제안, 허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7) 위조부품 방지

- ① 협력사는 승인된 원재료만 사용해야 되며 위조된 원재료나 부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협력사는 위조된 재료 사용 및 생산되는지 주기적 확인해야 하며 발견시 즉시 고객사에 통보한다.

8) 원자재수급관리

- ① 협력사는 원자재 취급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쟁광물 외 광물(리튬, 코발트, 니켈 등)을 취급함에 있어 OECD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.


5. 환경

1) 환경경영체계 구축

- ① 협력사는 국가별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한다.
- ② 협력사는 사업장의 환경경영을 위해 조직, 계획, 절차, 점검,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한다.

2) 수자원(용수/폐수) 관리

- ① 협력사는 양질의 용수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-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한다.

3) 온실가스 관리

- ①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.
- ② 협력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한다.

4) 폐기물 관리

- ① 협력사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.
- ② 협력사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한다.
- ③ 협력사는 재사용, 재활용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5) 대기오염물질 관리

- ①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,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6) 화학물질 관리

-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, 보관, 사용,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한다.
- ② 원부자재 및 제품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및 조치를 이행에 노력한다.

6. 노동/인권

1) 차별금지


- ① 협력사는 성별, 인종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면담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.

2) 인간존중

- ① 협력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을 존중한다.

3)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- ① 협력사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 한다.
- ② 협력사는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,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, 헐박 등을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하지 않는다.

4)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

- ① 협력사는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하며 근로에 합당한 보수(초과수당포함)를 지급한다.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, 삶의 질 개선 위한 복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 또한 임직원 역량개발 위해 노력하며, 국가별 법률에서 제시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5) 인도적 대우

- ① 협력사는 전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② 협력사는 정신적, 육체적 강압, 학대 행위는 하지 않는다.

6) 결사의 자유보장

- 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7)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-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, 협박,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의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 또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하는 거래업체는 거래 중단하며,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원칙적 금한다.
- ③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
7. 안전, 보건

1) 안전보건체계

- ①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, 절차, 결과 등의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.

2) 비상상황 대응

-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, 집단감염,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.
-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대비 시설 전반(탈출로, 유도등, 경보기, 화재 감지기, 소방시설)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정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.

3) 기계·기구·설비 등의 안전관리

- ①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, 기구,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, 평가 관리한다.
- ② 협력사는 안전시설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, 방호벽 등을 설치 운영 관리해야 한다.
-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 및 기능유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.

4) 사고관리

-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.
-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,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시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5) 보건관리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, 식당 등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시설 제공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
6) 안전진단

- ① 협력사는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 및 유해인자 노출을 확인하고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공 및 비치해야 하며 임산부, 연소자 등은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.
- ③ 임산부,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장애인,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.


8. 운영 시스템

1) 행동규범 공유

-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전파해야 한다.

2) 교육 및 소통

-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.

	ESG 경영	문서번호	DHLY-S06	제개정일	2024.04.02.
	협력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1	관리팀	총무관리팀

3) 리스크 관리

- ① 협력사는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4) 정보관리

-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에 명시되는 각 분야의 현황과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

5) 고충처리제도 운영(신고제)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여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, 위협, 보복,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,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.

6) 담당자 선임

- ① 협력사는 사회적 활동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를 선임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.

7) 규범 준수

-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적절한 문서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.
-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위한 실행계획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8) 협력업체 관리

- ①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윤리, 환경, 노동, 인권,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② 협력사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 확인 및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 한 경우 개선 권고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